

2021. 9. 1. ~ 9. 8.
- 8일간 -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152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9.8.	원안가결
2153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21.9.8.	원안가결
2154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9.8.	원안가결
215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9.8.	원안가결
2156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안	21.9.8.	원안가결
2157	장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9.8.	원안가결
2158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21.9.8.	원안가결
2159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9.8.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
- 제출일자 : 2021. 8. 25.
-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재향경우회의 주요 목적 및 정의 명시
 - 지원사업 등(안 제3조)
 -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안 제4조~안 제5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과 절차,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 보조금의 반환(안 제6조)
 - 지원대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반환 조항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자 : 장성군수(재무과)
- 제출일자 : 2021. 8. 25.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카드종류 : 3종(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카드)
- 제휴기관 : 군, 농협은행, BC카드(주) / 제휴일 : 2006. 6. 12.
- 적립금 : 40,669천원(2020. 1월 ~ 12월 사용분)
- 법인카드(이용금액 1.0%) / 보조금카드(이용금액 0.5%) : 28,526천원
- 공무원 복지카드(이용금액 0.3%) : 12,143천원

(단위 : 천원)

부 서	출연 기관	2021년 출연금	사업 내용	관련 법령
재무과	장성장학회	40,670	지역인재 발굴 육성 교육기반 마련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시설사업소)

○ 제출일자 : 2021. 8. 25.

○ 제안이유

- 2021. 6월 준공된 장성군 파크골프장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로 포함하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관련 조문 개정

○ 주요내용

-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파크골프장 추가 명시 (안 제3조)

- 사용료 무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조례로 명시하여 명확화 함 (안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소)

○ 제출일자 : 2021. 7. 15.

○ 제안이유

-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함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변경(안 제2조)

- (현행) 장성읍 기산리 489-5번지
- (개정) 장성읍 강변안길 100

- 설치·운영 지원 변경(안 제4조제4항)

-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
- (개정)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병원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

- 공유재산 사용 등 신설(안 제9조의 2)

- 「노인복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음

- 회계 및 결산 방법 변경(안 제13조)

- (현행) ·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 (개정) ·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경제교통과)

○ 제출일자 : 2021. 8. 25.

○ 제안이유

-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업무를 자치경찰과 효율적 관리 필요
 - 2021. 1. 1. 교통안전시설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
 - 2021. 4. 15.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삭제
 - 이 조항을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조례」로 제정

○ 주요내용

- 예산편성 등(안 제2조)

-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통보
- 군수는 예산이 배정되면 3개월 내 사업계획 수립, 심의서 접수 시에는 1개월 내 설치계획 수립

- 관리대장 작성 등(안 제3조)

-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안전표지 관리대장, 노면표시 관리대장

- 점검사항(안 제4조)

- 신호등 설치장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의 상태 등의 적정여부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

○ 제출일자 : 2021. 8. 25.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절차 폐지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 관련 조례 정비(안 제1조, 제3조)

조례	현행	개정	법률 및 근거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법률 근거
제3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
제3조제2항	장성군 가로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장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명칭 변경

-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 삭제

조례	현행	개정	법률 및 근거
제11조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삭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2040년 장성군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

○ 제출일자 : 2021. 8. 25.

○ 제안이유

- 기 수립된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시기 도래 및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한 향후 20년간의 장성군 미래발전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재정립하고, 현실여건에 부합한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40년 장성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518.58km²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목표연도 : 2040년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미래상 및 추진전략 설정 등
- 주요내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구 분	세 부 내 용
행정구역 면적	· 518.58km ² (장성군 행정구역 전역)
목 표 연 도	· 2021년~2040년 (기준년도 2018년)
목 표 인 구	· 현재 47,259인 (2018년) → 70,000인 (2040년)
공간구조 및 생활 권	· 1중심, 1지역중심, 3지구중심 · 4개 생활권 (중부, 서부, 북부, 남부)

미 래 상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황금빛 물결, 스마트 성장도시 장성
추진전략	• 청정자연과 관광자원이 조화로운 “관광형 휴양도시”
	• 생활이 편리하고 살고싶은 “전원형 정주도시”
	• 특화산업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제활력 산업도시”
	• 주민체감형 계획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민행복 복지도시”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용지 13.96㎢ → 14.00㎢ (증 0.04㎢)
	• 시가화예정용지 5.75㎢ → 6.00㎢ (증 0.25㎢)
주택보급	• 43천호 (보급율 11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출일자 : 2021. 8. 25.

○ 주요내용

- 규모 : 531,763,257천원

- 회계별

· 일반회계 : 520,360,972천원

· 특별회계 : 11,402,285천원

-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531,763,257	476,256,387	55,506,870
일반회계	520,360,972	465,594,764	54,766,208
특별회계	11,402,285	10,661,623	740,662

○ 의결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 : 원안 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수정 가결(수정 세부내역 별첨)
 - 제출 예산액 : 520,360,972천원
 - 삭 감 액 : 1,430,000천원
 - 수정 예산액 : 520,360,972천원
-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 원안가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역

1. 세 입 : 531,763,257천원

-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31,763,257	1,430,000	1,430,000	-	531,763,257
일반회계	520,360,972	1,430,000	1,430,000	-	520,360,972
특별회계	11,402,285	-	-	-	11,402,285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531,763,257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1,43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31,763,257	1,430,000	1,430,000	0	531,763,257
일반회계	520,360,972	1,430,000	1,430,000 (재해·재난목 적예비비)	0	520,360,972
특별회계	11,402,285	0	0	0	11,402,285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1) 일반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5 건	2,480,000	1,430,000	950,000
144	시설비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350,000	0200,000	150,000
197	시설비	황룡시장내 교통여건 개선사업	300,000	280,000	20,000
204	시설비	용작교 설치공사	1,500,000	750,000	750,000
227	시설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표지석 설치	50,000	20,000	30,000
239	민간보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180,000	180,000	-

2) 특별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해당없음			